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253
----------	-------

제출년월일 : 2004. 5. 20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하여 각 시설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파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추가로 설치 및 확보되어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파주시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설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①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직업훈련·재활훈련·교육.
 - ②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장애인 직업재활로서 장애인들의 생산활동 시설.
 - ③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보호하여 보호자들의 직업 및 사회활동 지원
 - ④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수행(안 제17조·제18조·제20조 및 제23조).
- 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소재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 및 사용범위를 정함(안 제6조)
- 이용료징수액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
- 라. 시장은 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 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위탁시 공개모집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 바. 각 시설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기능 명시(안 제15조)
- 사. 장애인보호시설 입소 및 입주자격과 퇴소조건을 명시함.(안 제21조 · 제22조 · 제24조, 제25조)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함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사회심리·교육·직업 및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라 함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을 주간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 함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조 (설치)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다.

1.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이라 한다)
2.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3. 파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4. 파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
5. 기타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료 및 체육 등에 관련한 장애인복지시설

제4조 (소재지) ①종합복지관은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428-3번지에 둔다.

②작업장은 금촌동 108-64번지에 둔다.

③보호시설은 파주시 금촌동 949-27 번지에 둔다.

④공동생활가정은 파주시장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의 토지소재지로 한다.

제5조 (이용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 정한 이용료징수 산정기준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비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개모집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능력· 재정능력 및 사회복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시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 (위·수탁협약)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갱신계약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위·수탁 협약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직원 및 급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별 직제 및 임금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재활자립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파주시에 귀속된다.

제14조 (승인) ①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2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6. 기타 시설의 신·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②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이용자(또는 지역 장애인 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법인(위탁 및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3. 지역주민
4. 후원자 대표
5. 시의회 의원
6. 관계공무원
7.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기능을 수행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16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17조 (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상 담 사 업 : 건강관리, 직업알선, 재활, 결혼 등
2. 직업훈련사업 : 기능훈련, 직업훈련 등
3. 재활훈련사업 : 기능회복운동, 생활적응훈련,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4. 교 육 사 업 : 점자·수화·컴퓨터교육 등
5.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제18조 (사업)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직업상담 및 지도
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활동
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4. 기타 장애인 재활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9조 (고용대상 장애인) ①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고용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20범위안에서 생산공정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고용은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에 따른 제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결정한다.

제5장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

제20조 (사업)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입소자격 및 기간) ①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 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에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② 단기보호는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퇴소조건)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제23조 (사업)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 지도
2. 독립생활보장 지도
3. 주간에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학교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입주자격 및 기간)①파주시에 거주하는 시설 또는 재가 장애인으로서 수탁자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 자 이어야 하며, 저소득 계층을 우선 입주시키도록 한다.

②입주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퇴소조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3. 본인의 결혼
4. 기타 수탁자가 입주자의 공동생활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보 칙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장애인복지 시설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와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체결된 위·수탁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협약으로 본다.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4년 5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하여 각 시설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파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추가로 설치 및 확보되어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파주시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설 및 기능을 규정함. (안 제2조)

- ① 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직업훈련·재활훈련·교육
- ②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로서 장애인들의 생산활동 시설
- ③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보호하여 보호자들의 직업 및 사회활동 지원
- ④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수행. (안 제17조·제18조·제20조 및 제23조)

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소재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 및 사용범위를 정함. (안 제6조)

- 이용료징수액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시장은 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음. (안 제8조)

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위탁시 공개모집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9조)

바. 각 시설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기능 명시. (안 제15조)

사.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및 입주자격과 퇴소조건을 명시함. (안 제21조·제22조·제24조, 제25조)

3. 검토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각각 시설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향후 파주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준공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업추진 등 추가적으로 설치 및 확대되는 각종 장애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 시설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대한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파주시 금촌동 949-27번지 상에 약 60평 규모의 시설을 건립 중에 있어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금촌과 문산지역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10명 규모로 장애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임.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

호조치를 함은 물론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에 문제점이 없음.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대한 정의와 시설별 기능을 명시하였음.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시설의 소재지를 각각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 및 사용범위,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이용료징수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부담원칙을 정하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 산정기준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9조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시 공개모집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은 위해서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수탁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 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명시하였음.
- 안 제 21조와 제22조에서는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입소 자격과 입소기간, 보호시설의 퇴소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입주자격과 기간, 퇴소조건 등을 각각 명시하였음.
- 이상과 같이 동 조례제정안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됨.
-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8,500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음.
- 끝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사업추진 등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파주시장에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53
----------	-------------

제안년월일 : 2004년 5월 29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1. 수정이유

- 동 제정조례안 제14조 시장 승인사항에 대하여 사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승인을 받도록 하며, 제15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 절차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잘못 인용된 조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안 제14조 시장 승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함.
- 안 제15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시의회 의원은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않도록 함.
- 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호에 잘못 인용된 조문내용(제8조)을 수정(제7조)함.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2호 내지 제7호”로 “사전에”를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로 하며,
제14조제1항제2호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5조제3항 전단중 “시설의 장의”를 “해당 시설의 장의”로 하고, “다만, 제6호에”를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3조제1호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행	수정안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생략)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제7조의 ----- -----, ②-③(현행과 같음)
제10조 (위·수탁협약)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②-③(생략)	제10조 (위·수탁협약) ① 제7조의 ----- -----, ②-③(현행과 같음)
제13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생략) 1. 수탁자가 제8조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4.(생략) ②(생략)	제13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현행과 같음) 1. ----- 제7조 ----- -----, 2.-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4조 (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2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생략) <신설> 2.(생략) 3.(생략) 4.(생략) 5.(생략) 6.(생략) 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4조 (승인) ① -----, 제2호 내지 제7호에 -----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1.(현행과 같음)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현행 제2호와 같음) 4.(현행 제3호와 같음) 5.(현행 제4호와 같음) 6.(현행 제5호와 같음) 7.(현행 제6호와 같음) <삭 제>
제15조 (운영위원회) ①-②(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7.(생략) ④-⑤(생략) 1.-4.(생략)	제15조 (운영위원회)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시설의 장의 ----- -----,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 -----, 1.-7.(현행과 같음) ④-⑤(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